



코스피 2085.26 (+25.93)	코스닥 650.19 (+8.46)
금리 (미국 3년) 1.05 (+0.02)	환율 (원/달러) 1181.20 (-6.60) (5일)



[금융]
인터넷은행법 부결
K뱅크 정상화 난망
고민깊은 KT
05

‘모빌리티 무덤’ 된 한국

우버 이어 타다까지 ‘표’ 앞에 멈춘 혁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박
박재욱 “도전할수 없는 사회 정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하겠다”

‘한국 모빌리티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타다가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을 접게 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더 이상 도로에서 달리는 타다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과거 카풀업체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한국이 ‘모빌리티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1500여 대를 중심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개정안 통과후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까지는 운행할 수 있지만 VCNC는 한계가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VCNC가 타다 베이직 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어시스트’, 공항까지 픽업해주는 ‘에어’,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프리미엄’, 차량을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하고 이용하는 ‘프라이빗’ 등 서비스도 종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반이 되는 타다 베이직 없이는 나머지 서비스도 경쟁력

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 카풀업체들도 타다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외국에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버는 2013년 국내 진출을 시도한 후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다가 2015년 5월 ‘우버 금지’를 골자로 한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예 사업을 철수했다. 택시를 위협하는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특정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해 여객법이 고쳐지는 모양새다.

우버 이후 티티카카, 콜버스, 플러스 등 수많은 카풀업체가 등장했지만 규제와 반발에 부딪혀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철수했다. 카풀 업체 택시를 인수하며 지난해 10월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격화하자 카풀 서비스를 포기하고 택시와 손잡는 방식을 택했다. 카풀을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에도 타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차량당 해당 일정 기여금을 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가 구성한 기여금이 해당 택시 면허값인 약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적어도 1200억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 타다의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타다금지법이 통과하면서 이번에도 정치권과 기존 이익집단인 택시업계에 막혀버렸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차고지에 타다가 주차돼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금리인하 실기했나... 한은, 또 뒷북?

美연준, 코로나19에 선제 대응
이주열 “통화정책 운영에 감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실기론’에 불이 붙고 있다. 미 연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례회의도 없이 0.50%포인트 ‘빅 컷’을 단행한 반면 1주일 전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며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난 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미 금리인하와 관련해 “정책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해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 한은, ‘실기론’ 대두...임시 금통위

가능성도

5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르며 이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달 9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나 내리는 ‘긴급 처방’을 내리자 한은도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주 앞두고 임시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한은과 미 연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한은의 실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결단을 단행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일각에서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긴급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0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9·11 테러가 난 2001년 9월에도 임시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염병과 경제학” 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이 급박해 한은이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생명 지킴의 시작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인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을 받으며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인사 742명을 조기 임용하고, 9일부터 대구·경북 및 각 지역 선별진료소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법 확정판결에 소멸시효 지난 키코, 다시 배상하라니

배임 우려에... 은행들 “난감하네”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결정
씨티은행은 ‘불수용’ 입장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선불리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소지가 있는 데다 피해기업이 더해지면 배상금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의 미온적인 입장이 지속되면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조정결과가 실제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이사회를 열거나 내부 논의를 거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논의해 이날 오후나 6일 금감원에 수락여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에 수락여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로 이사회를 열진 않지만 내부논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차례 수락여부 결정을 연장했음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수락여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판결이 나온 데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끝난 상황에서 이사회가 배상을 의결할 경우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5@